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장청 규정
2026 년 제 3 호
제명
「비할랄 표시사항의 형태 및 기재·표시 절차에 관한 규정」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장청장

제정 이유 : 「할랄제품보장 분야 운영에 관한 2024 년 정부규정 제 42 호」 제 110 조제 3 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비할랄 표시사항의 형태 및 기재·표시 절차에 관한 할랄제품보장청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 : 1. 「소비자 보호에 관한 1999 년 법률 제 8 호」(1999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 22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 3821 호)
2. 「일자리 창출에 관한 2022 년 정부규정 대체 법률 제 2 호의 법률 제정에 관한 2023 년 법률 제 6 호」(2023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 41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 6856 호)로 최종 개정된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33 호」(2014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 295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 5604 호)
3. 「할랄제품보장 분야 운영에 관한 2024 년 정부규정 제 42 호」(2024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 229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 6998 호)
4. 「할랄제품보장청에 관한 2024 년 대통령령 제 153 호」(2024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 349 호)
5. 「할랄제품보장청 조직 및 직무수행규칙에 관한 2024 년 할랄제품보장청 규정 제 1 호」(2024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공보 제 933 호)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정 사항 : 「비할랄 표시사항의 형태 및 기재·표시 절차에 관한 할랄제품보장청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변형제품과 관련된 물품 및 용역과 국민이 착용·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품을 말한다.
2. “원료”란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요소를 말한다.
3. “캄르(Khamr)”란 포도류 또는 기타 원료 유래 여부나 가열·조리 여부를 불문하고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일체의 주류성 음료를 말한다.
4. “알코올”이란 화학식이 C_2H_5OH 인 화학 화합물인 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올을 말한다.
5. “비할랄 표시사항”이란 해당 제품이 비할랄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제품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6. “포장재”란 내용물과의 직접 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제품을 담거나 싸는 데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
7. “할랄제품보장시스템(SJPH)”이란 할랄제품 제조공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료, 제조공정, 제품, 자원 및 절차를 규율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축·적용 및 유지·관리하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란 할랄제품보장 운영 분야에서 정부 직무를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비부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 2 조

이 규정의 목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a. 소비자, 영업자, 할랄제품보장청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기준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

- b. 인도네시아 영토 내로 반입·유통 및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비할랄 표시사항의 형태 및 기재·표시 절차를 규정한다.

제 3 조

- (1) 금지된 원료 유래 제품은 할랄 인증 취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제 1 항에 따른 제품에는 비할랄 표시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 준

제 1 절 통칙

제 4 조

- (1)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비할랄 표시사항의 기재·표시는 비할랄 표시사항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한다.
- (2) 제 1 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원료 기준
 - b. 제조공정 기준
- (3) 제 2 항에 따른 기준은 할랄제품보장시스템에 적합하지 아니한 원료 및 제조공정을 따른다.

제 2 절 원료 기준

제 5 조

- 제 4 조제 2 항 a 목에 따른 원료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 a. 동물 유래 원료
 - b. 식물 유래 원료
 - c. 알코올 함유 원료
 - d. 미생물 유래 원료
 - e. 화학적 공정, 생물학적 공정 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거쳐 제조된 원료
 - f. 인체 유래 부위 및 성분
 - g. 불결물(*najis*) 또는 불결물 오염 물질(*mutanajis*)

제 6 조

제 5 조 a 목에 따른 동물 유래 원료 중 섭취용 원료의 사용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a. 금지된 육상동물
- b.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동물
- c.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양서류
- d.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카바이츠(*khabaits*, 혐오 동물)
- e.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동물 사체
- f. 오물을 섭취하여 육질의 냄새와 맛이 변한 동물(*jallalah*)
- g.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
- h. 금지된 동물의 젖
- i. 금지된 동물의 알

제 7 조

제 6 조 a 목에 따른 금지된 육상동물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동물군을 포함한다.

- a. 돼지 및 개를 비롯하여 그 유도체와 돼지 및 개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완제품을 포함하는 중증 불결물(*najis mughallazhah*)에 해당하는 동물
- b. 송곳니가 있는 맹수류 동물
- c. 먹이를 움켜쥐는 갈고리발톱이 있는 맹수·맹금류 동물
- d. 이슬람 율법상 살생이 금지된 동물
- e. 이슬람 율법상 구제·살생이 명해진 동물
- f.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법적 결정에 근거한 그 밖의 동물

제 8 조

제 6 조 b 목에 따른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동물의 기준은 가열·조리를 거친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치명적인 독소, 기생충 또는 박테리아를 함유한 동물로 한다.

제 9 조

제 6 조 c 목에 따른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양서류는 육지와 물속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동물(*barma i*)을 말한다.

제 10 조

제 6 조 d 목에 따른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카바이츠(*khabaits*, 혐오 동물)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a. 혐오감을 주는 동물
- b. 기어다니는 동물(포복 동물)

c. 곤충(메뚜기, 귀뚜라미, 연지벌레(코치닐) 및 락각지벌레는 제외한다)

제 11 조

제 6 조 e 목에 따른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동물 사체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a. 이슬람식 도축을 거치지 아니하고 폐사한 할랄 동물(질식사한 동물(*al-munkhaniqah*), 구타나 학대로 맞아 죽은 동물(*al-mawquzah*), 추락사한 동물(*al-mutaraddiyah*) 및 다른 동물의 뿔에 받혀 죽은 동물(*al-nathihah*)을 포함한다)
- b. 맹수에게 물려 죽은 동물(수렵용으로 훈련된 사냥개가 물어 죽인 경우로서 사냥개를 풀 때 바스말라(*basmalah*)를 낭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 c. 알라 이외의 이름을 부르며 도축한 동물
- d. 할랄제품보장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도축된 동물

제 12 조

제 11 조에 따른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동물 사체는 소, 낙타, 염소, 물소, 말, 닭, 오리, 비둘기와 같은 가축 및 캥거루, 토끼, 다람쥐, 자라와 같은 그 밖의 할랄 동물로 한다.

제 13 조

제 5 조 a 목에 따른 동물 유래 원료 중 비접취용 원료의 사용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a. 돼지, 개 및 이들 양쪽 또는 어느 한쪽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 유래 성분의 사용
- b. 할랄제품보장시스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도축된 할랄 동물 유래 성분의 사용
- c. 돼지, 개 및 이들 양쪽 또는 어느 한쪽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의 사체 가축 사용
- d. 할랄제품보장시스템에 따른 무두질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할랄 동물 또는 금지된 동물의 사체 가축 사용
- e. 돼지, 개 및 이들 양쪽 또는 어느 한쪽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의 뼈 사용
- f. 금지된 동물의 뼈 사용
- g. 할랄제품보장시스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도축된 식육용(*lahm*) 할랄 동물의 뼈 사용
- h. 돼지, 개 및 이들 양쪽 또는 어느 한쪽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의 깃털, 털, 발톱 및 뿔의 사용

제 14 조

제 5 조 b 목에 따른 식물 유래 원료의 사용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a. 취하게 하거나 이를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원료
- b. 비할랄 용매 또는 추출제를 사용하는 식물 추출물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비할랄 첨가제 또는 가공보조제가 투입되는 원료

제 15 조

제 5 조 c 목에 따른 알코올 함유 원료의 사용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a. 캄르 산업에서 유래한 알코올 원료
- b.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발효 또는 비발효 음료 제품 원료
- c. 캄르가 첨가된 원료
- d. 물리적으로 분리된 액상 형태의 캄르 산업 부산물 또는 그 유도체 원료

제 16 조

제 5 조 d 목에 따른 미생물 유래 원료의 사용은 배양 및 제조 과정에서 금지된 원료가 혼합·함유 또는 오염된 경우 금지되며, 이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a. 돼지 유래 배지에서 배양된 미생물
- b. 돼지 이외의 불결물(*najis*)을 함유한 배지에서 배양된 미생물로서 후속 공정에서 미생물과 불결물(*najis*) 함유 배지 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랄제품보장시스템에 따라 정화되지 아니한 미생물
- c. 인간 또는 금지된 동물의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생산된 미생물
- d. 제조공정에서 금지된 미생물 또는 돼지 유래 배지에서 배양된 미생물을 투입하여 생산된 미생물 제품
- e. 제조공정에서 돼지 이외의 불결물(*najis*) 함유 배지에서 배양된 미생물을 투입한 미생물 제품으로서 후속 공정에서 미생물 제품과 불결물(*najis*) 또는 불결물 오염 물질(*mutanajis*) 함유 배지 간의 분리가 할랄제품보장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생물 제품
- f. 돼지 또는 그 유도체 유래의 미생물 배양 배지, 첨가제 또는 가공보조제

제 17 조

제 5 조 e 목에 따른 화학적 공정, 생물학적 공정 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거쳐 제조된 원료의 사용은 배양 및 제조 과정에서 금지된 원료가 혼합·함유 또는 오염된 경우 금지되며, 인체 유래 유전자나 기타 부위, 금지된 동물, 불결물(*najis*) 원료 또는 불결물 오염 물질(*mutanajis*) 원료를 사용한 원료를 포함한다.

제 18 조

- (1) 제 5 조 f 목에 따른 인체 유래 부위 및 성분의 사용이란 모발 또는 인체의 모든 부위를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및 용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제 1 항에 따른 식품, 음료, 의약품 및 화장품의 원료는 화학적 공정, 생물학적 공정 및 유전자재조합 공정을 거쳐 제조될 수 있다.

제 19 조

제 5 조 g 목에 따른 불결물(*najis*) 또는 불결물 오염 물질(*mutanajis*) 원료의 사용은 경증 불결물(*najis*), 중등도 불결물(*najis*), 중증 불결물(*najis*)로 분류되는 원료 및 불결물(*najis*)에 오염된 모든 원료를 포함한다.

제 3 절

제조공정 기준

제 20 조

제 4 조 제 2 항 b 목에 따른 제조공정 기준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a. 비할랄 동물의 도축 위치, 장소 및 도축 장비
- b.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및 진열 과정에서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와 접촉하여 오염된 제조공정 위치, 장소 및 장비
 1. 불결물(*najis*) 또는 불결물 오염 물질(*mutanajis*) 원료
 2. 불결물(*najis*) 또는 불결물 오염 물질(*mutanajis*) 반제품(intermediate product)
 3. 불결물(*najis*) 또는 불결물 오염 물질(*mutanajis*) 완제품
- c. 영업자가 고의로 원료 또는 제품을 불결물(*najis*) 또는 불결물 오염 물질(*mutanajis*) 원료와 접촉하게 한 경우
- d. 할랄 동물 지육 및 식육 보관 장소를 포함한 도축 위치, 장소 및 도축 장비가 비할랄 동물과 접촉하여 오염된 경우

- e. 할랄 제품의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및 진열 장소와 가공 장비가 비할랄 제품과 접촉하여 오염된 경우
- f. 할랄 제품의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및 진열 장소와 가공 장비가 비할랄 제품의 공정 장소 및 장비와 접촉하여 오염된 경우
- g. 할랄 제품의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및 진열 장소와 가공 장비가 중증 불결물(*najis mughalladzah*) 이외의 물질과 접촉하여 오염되었으나 그 세척·정화가 할랄제품보장시스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h. 비할랄 동물 유래 신선 제품의 포장, 보관, 유통, 판매 및 진열 행위
- i. 할랄 동물 유래 신선 제품의 포장, 보관, 유통, 판매 및 진열 과정이 비할랄 동물 유래 신선 제품의 포장, 보관, 유통, 판매 및 진열 과정과 접촉하여 오염된 경우
- j. 비할랄 동물 및 비동물 유래 신선·가공 제품의 판매 및 진열 행위
- k. 할랄 동물 및 비동물 유래 신선·가공 제품의 판매 및 진열 과정이 비할랄 동물 및 비동물 유래 신선·가공 제품의 판매 및 진열 과정과 접촉하여 오염된 경우
- l. 돼지 또는 그 유도체 유래 원료와 접촉한 제조공정 장비와 세척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 m. 검체 채취 기구 및 검체 용기가 돼지 또는 그 유도체와 접촉한 경우
- n. 검체 채취 기구 및 검체 용기와 돼지 또는 그 유도체 유래 원료와 접촉한 제조공정 장비의 세척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 o. 고압증기멸균기로 멸균한 검체 채취 기구 또는 검체 용기를 돼지 또는 그 유도체 유래 원료와 접촉한 제조공정 장비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 3 장
비할랄 표시사항의
형태 및 기재·표시 절차

제 1 절
비할랄 표시사항의 형태

제 21 조
비할랄 표시사항의 형태는 다음 각 목의 문구 및 도안으로
구성된 표식으로 한다.

- a.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 문구 및 돼지 도안
 - b. “NON HALAL(비할랄)” 문구
- 세부적인 형태는 이 규정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을 구성하는
별표와 같다.

제 2 절
비할랄 표시사항의 기재·표시 절차

- 제 22 조
- (1) 비할랄 표시사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a. 제품의 포장재
 - b. 제품의 특정 부위
 - c. 제품의 특정 위치
 - (2) 제 1 항 a 목에 따른 제품 포장재의 비할랄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수령하는 최외곽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제 23 조
- 제 22 조에 따른 비할랄 표시사항의 기재·표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제품 포장재, 제품의 특정 부위 또는 제품의 특정 위치에
비례에 맞게 배치하여야 한다.
 - b. 가장 쉽게 눈에 띄고 읽기 쉬운 부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 c. 도안, 색상 및 그 밖의 디자인으로 구성된 배경을 사용하여
비할랄 표시사항의 크기, 형태 및 색상을 흐리게 하거나
가려서는 아니 된다.
 - d.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24 조

- (1)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비할랄 표시사항의 기재·표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제 1 항에 따른 의약품은 원료의약품, 일반의약품, 한방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을 포함한다.

제 25 조

의료기기에 대한 비할랄 표시사항의 기재·표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26 조

- (1) 벌크(Bulk)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영업자는 용기, 디스펜서, 포장재 또는 쉽게 확인하고 판독할 수 있는 그 밖의 기재·표시 수단에 비할랄 표시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에 따른 벌크 형태란 소매 형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말한다.
- (3) 영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용기, 디스펜서 또는 그 밖의 기재·표시 수단에 기재·표시하는 것 외에 원료 제조자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제 3 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제조공정 흐름도, 제품 성분표,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 설문서 및 진술서로 한다.
- (5) 제 3 항에 따른 증빙서류에는 해당 제품이 금지된 원료 유래이거나 제품의 제조공정이 할랄제품보장시스템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6) 영업자는 발급 기관 및 문서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증빙서류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7 조

조리 식품 및 음료 제공업 분류 제품으로서 그 상호(또는 영업 명칭)에 ‘돼지고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비할랄 표시사항 기재·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경과조치

제 28 조

이 규정의 공포 전에 인도네시아 영토 내로 반입·유통 및 판매된 제품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최장 12 개월 이내에 이 규정의 요건에 적합해지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29 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할 것을 명한다.

자카르타에서 제정함
2026 년 7 월 13 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장청장

서명

AHMAD HAIKAL HASAN

자카르타에서 공포함
2026 년 7 월 23 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부 법제총국장

서명

DHAHANA PUTRA

202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공보 제 512 호

원본 대조필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장청
법무·인사·홍보국장

[서명 및 관인 날인]

Beny Cahyadie
공무원등록번호(NIP): 198204102000121001

별표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장청 규정

2026 년 제 3 호

제명

「비할랄 표시사항의 형태 및 기재·표시 절차에 관한 규정」

비할랄 표시사항의 형태

A. 식품 및 음료 카테고리 제품

1. 돼지 및 그 유도체 유래 제품

흰색 배경의 빨간색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빨간색의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 문구와 돼지 도안으로 구성된 표식 형태의 비할랄 표시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배경색이 빨간색인 경우, 비할랄 표시사항의 문구 및 배경색은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이루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2. 돼지 및 그 유도체 이외의 금지된 원료 유래 제품

흰색 배경의 빨간색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빨간색의 “NONHALAL” 문구로 구성된 표식 형태의 비할랄 표시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배경색이 빨간색인 경우, 비할랄 표시사항의 문구 및 배경색은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이루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3. 비할랄 표시사항 기재·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제조된 제품
흰색 배경의 빨간색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빨간색의 “NONHALAL” 문구로 구성된 표식 형태의 비할랄 표시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배경색이 빨간색인 경우, 비할랄 표시사항의 문구 및 배경색은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이루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B. 식품 및 음료 이외의 카테고리 제품

1. 비할랄 표시사항 기재·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원료 유래 제품
2. 비할랄 표시사항 기재·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
흰색 배경의 빨간색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빨간색의 “NON HALAL” 문구로 구성된 표식 형태의 비할랄 표시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배경색이 빨간색인 경우, 비할랄 표시사항의 문구 및 배경색은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이루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C. 비할랄 표시사항의 서체 및 색상 코드

1. 흰색 배경의 빨간색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빨간색의 “NON HALAL” 문구로 구성된 표식 형태의 비할랄 표시사항에는 다음의 서체 및 색상 코드를 적용한다.

a. 서체

대문자 “NON HALAL” 문구의 서체는 Rodfat 서체를 사용한다.

b. 색상 코드

“NON HALAL” 문구 및 직사각형 테두리에는 다음의 색상 코드를 적용한다.

코드 #fc0202(선명한 빨간색) 및 #ffffff(순백색)

C: 0%, M: 100%, Y: 100%, K: 0%

R: 252, G: 2, B: 2

코드 #ffffff(순백색)

C: 0%, M: 0%, Y: 0%, K: 0%

R: 255, G: 255, B: 255

문구 형태의 비할랄 표시사항 도안은 할랄제품보장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장청장

서명

AHMAD HAIKAL HASAN

원본 대조필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장청
법무·인사·홍보국장

[서명 및 관인 날인]

Beny Cahyadie
공무원등록번호(NIP): 198204102000121001